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656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17,223,5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단체은 1993. 4. 2. 창립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51개 지역 B단체과 4개의 전문기관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다. A단체은 위 51개 지역 B단체 중 하나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환경교육, 홍보활동, 오염감시활동 등 환경관련 제반사항'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A단체은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1. 5.경 그 운영위원회에서 비법인사단 형태로 존속하고 있던 A단체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A단체은 2021. 6. 15.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21. 6. 28.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A단체은 2016. 3. 9.경 A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 ○○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23,067,620원{= 취득세 20,067,100원 + 지방교육세 2,006,710원 + 농어촌특별세 993,8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15. A단체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7,223,540원{= 취득세 15,165,100원 + 지방교육세 1,299,860원 + 농어촌특별세 758,58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4. 29. 피고에게 A단체과 원고는 그 실체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사건 각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6. 16.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제11,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종래의 비법인사단이었던 A단체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격을 취득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단체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나아가 A단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A단체과 그 실체가 동일한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단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에서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던 A단체이 원고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단체의 회원들이 공동소유의 일종으로서 총유하는 관계에 있었던 반면, 원고로 설립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이와 같이 소유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상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변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A단체이 이전에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리고 A단체의 규약과 원고의 정관 등을 비교해 보면, 양자 사이에는 법인격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구성, 기본재산의 관리, 법인의 해산과 이에 대한 법적 규율 등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A단체	원고
임원의 구성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상설위원회 및 상설기구의 대표, 전문기관의 대표,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	이사장,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구성
규정의 변경	운영위원회 발의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재산 관리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없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 필요
해산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없음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등에 귀속

④ 나아가 등기선례 등에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계취득'은 '어떤 물건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는 '타인' 또는 '승계'의 개념을 핵심 표지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A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러한 개념 표지를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설령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도의 법령인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앞서 본 취득에 관하여 별다른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2. 4. 26. 법률 제18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